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7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허영
이원택·박민규·조계원
김교홍·신정훈·문금주
정준호·정진욱·임미애
조인철·이개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심화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收入)감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

협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收入)감소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책보험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정책보험 운영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 라.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등).
- 마.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감독, 정책보험 관련 가격 공시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25조의2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을 “손해와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손해”를 “손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사업(이하 “정책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이라 한다)”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정책보험 발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4의 제목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을 “정책보험 및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

관리에 관한 재보험”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 관리에 관한 재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 제목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 및”을 “농업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청”을 “농촌진흥청·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정책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3의2.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

제2장의 제목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가축재해보험 및”을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임산물재해보험 및”을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및 임산물

제6조제1항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각각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중 “재

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작물재해보험 및”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으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본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8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각각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을 “정책보험가입자가 정책보험”으로, “재해보험계약”을 “정책보험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사업”으로,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을 “손해평가 등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재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으로, “운영비”를 “부가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비”를 “부가보험료”로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보험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21조 중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2의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3의2. 제14조에 따라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관한 지도·
점검·감독

3의3. 제25조의3에 따른 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제26조제3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중 “재
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 중 “재해보험”
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정책보험사
업자는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9조 중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의”로,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
보험가입자”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
자에게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4항제3호 중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한다.

⑥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한다.

⑦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농어업재해보험에”를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농어업재해보험법</u></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u>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농어업재해보험</u>”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u>보험을 말한다.</u></p>	<p><u>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u></p> <p>제1조(목적) ----- ----- ----- -----<u>손해와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u>-----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보험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가. <u>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u></p>

3. 4. (생략)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 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3. 4. (현행과 같음)

5. -----

-----손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

-----.

6.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보험사업(이하 “정책보험사업”이라 한다)-----

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의3(실태조사)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

--

4. 정책보험사업-----

5. -----정책보험-----

③ -----

-----정책보험-----

-----.

④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의3(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의4(정책보험 등의 심의) 정책보험 및 농어업재해 및 경영

(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략)
 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관리에 관한 재보험-----

-----농업정책보험심의회

1. 정책보험-----

2. 정책보험사업-----

3. (현행과 같음)

4.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 관리에 관한 재보험사업-----

5. (현행과 같음)

6. -----농업정책보험심의회-----

-----정책보험-----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

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4. (생략)

②·③ (생략)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
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
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제3조(농업정책보험심의회) ① 농

업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

-----농업정책보험
심의회-----
-----.

1. (현행과 같음)

2. 정책보험-----

3.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정책
보험-----

2. -----정책보험

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1. 1의2. (생략)

<신설>

2. 3. (생략)

② (생략)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및-----

제5조(보험목적물) ① -----

-----농업정책보험심의회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및 임산물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정책보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정책보험

② 정책보험

제7조(보험가입자) 정책보험

제8조(보험사업자) ① 정책보험사업

1. ~ 3. (현행과 같음)

② 정책보험사업

정책보험사업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보험사업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모집) ① 재해보험을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

정책보험사업-----
-----정책보험사업자-----
-----정책보험-----

-----.

1. 2. (현행과 같음)

② 정책보험사업자-----

-----.

③ 정책보험사업자-----

-----.

제10조(보험모집) ① 정책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생략)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정책보험-----

-----정책보험-----

-----.

-----정책보험사업자-----

-----.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보험사업자-----

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정책보험사업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보험사업자-----

-----.

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
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
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
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재해보
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

-----.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

-----정책보험사업자

-----정책보험사업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정책보
험-----

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정책보험가입자가 정책보험-----

-----정책보험계약

제14조(업무 위탁)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사업-----

-----손해평가 등
정책보험-----

제15조(회계 구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사업-----

-----.

제17조(분쟁조정) 정책보험-----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 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정책보험사업

-----.

② -----정책보험사업

-----.

제19조(재정지원) ① -----
-----정책보험가입자-----
-----정책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

-----부가보험료-----
-----.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정책보험가입자-----

-----.

② -----

-----정책보험사업자-----

-----이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

-----정책보험-----

-----.

④ -----부가보험료-----

-----.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정책보험기금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책보험-----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3. (생략)

③ (생략)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정책보험사업자-----

-----.

1. 정책보험사업자-----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설치) -----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

-----.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2(정책보험사업의 관리) ① -----
-----정책보험사업-----

-----.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생략)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생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신설>
 3. (생략)
<신설>
 - <신설>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 정책보험사업-----
 2. 정책보험-----
--
 3. (현행과 같음)
 4. -----정책보험-----

 5. (현행과 같음)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정책보험사업-----
2의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14조에 따라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감독
 - 3의3. 제25조의3에 따른 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4. -----정책보험사업-----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

정책보험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고 등) 정책보험의 정책보험가입자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제32조(과태료) ① 정책보험사업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3. (생략)

④ (생략)

-----.

② 정책보험사업자-----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1. -----

정책보험사업자-----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